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CONTENTS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I. 개념 및 유형

1. 성희롱
2. 성폭력
3. 디지털성폭력

II. 행위자별 예방방법

1. 의료인 성폭행 현황
2. 환자 및 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
3.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III. 사건처리 절차

1. 고충접수
2. 조사
3.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사건 종결

IV. 2차 피해 예방

1. 2차 피해란?
2. 2차 피해 행위
3. 2차 피해 예방전략
4. 2차 피해 대응 프로토콜

V. 신고센터

1. 현황
2. 상담신고 방법 및 연락처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성희롱

0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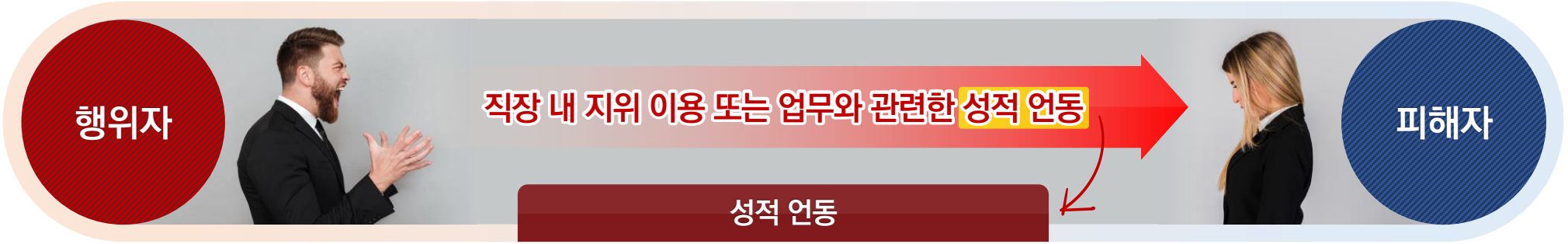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성희롱

01 개념



-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양성평등기본법」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
-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 성립

- 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청업체 혹은 하청업체 근로자, 구직자 「남녀고용평등법」
- 공공기관 종사자, 근로자로부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 「국가인권위원회법 」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성희롱

02 판단기준

- 행위자 및 피해자가 **법률에서 말하는 '행위자'와 '피해자'**에 해당되는가?
- **업무관련성**이 있는가?
-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는가?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했는가?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도 성희롱 성립
-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성립
-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성희롱

03 유형

① 육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①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예시

-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춤을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 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성희롱

03 유형

② 언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①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
(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 매체(카톡, 블로그 등)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④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⑤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예시

-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너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라 엉덩이가 탱탱하네."
- "우리 00씨~우리 이쁜이~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술 먹고 같이 자자."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은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00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성희롱

03 유형

③ 시각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예시

- 성기 모양으로 조각한 당근을 개수대에 담가 놓는 행위
- 야한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농담 등을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등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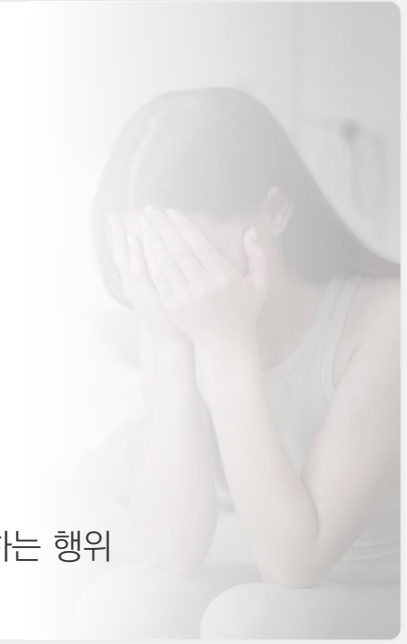
1. 성희롱

03 유형

④ 기타 성희롱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예시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성희롱

04 • 발생현황

|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단위 : %)

행위자 유형



- 남성 84
- 상급자 61
- 여성 16
- 동급자 21
- 외부인 9.3
- 사업주, 기관장 2.5

성희롱 피해 영향



- 특별한 영향 없었음 47.3
- 직장에 실망 28.7
- 근로의욕 저하 21.3
- 건강약화 8.2
- 이직의사 6.5
- 대인관계 어려워짐 4.9
- 기타 1.8

* 복수응답

발생 장소



- 회식 장소 43.7
- 사무실 36.8
- 야유회, 워크숍 등 8.0
- 출장, 외부미팅 등 5.6
- 기타 2.2
- 회식 후 귀과 도중 2.1
- 모름/무응답 1.6

피해 대처 유형



- 참고 넘어감 81.6
-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8.6
-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인 처리 8.2
-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 상의 1.1
- 사내기구에 공식 신고 0.8
- 기타 0.7
- 모름/무응답 0.4
- 외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 0.0

2. 성폭력

개념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공연음란의 죄
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범죄 및 미수범
   - 약취, 유인, 매매 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 약취, 유인, 매매 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 추행, 간음한 경우
   -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죄를 범할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
3.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 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4. 강도강간의 죄 및 미수범
5. 특수강도강간부터 미수범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2. 성폭력

02 · 유형

①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

-「형법」 제297조 등당

②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7조의 2 등

③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도 성립

-「형법」 제297조의 2 등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2. 성폭력

02 · 유형

④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형법」 제297조 등당
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형법」 제303조 제1항
⑥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 2 등
⑦ 통신매체를 이용한 촬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 성폭력

02 · 유형

⑧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 '반포 등')하는 행위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⑨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하거나, 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등을 하는 행위

*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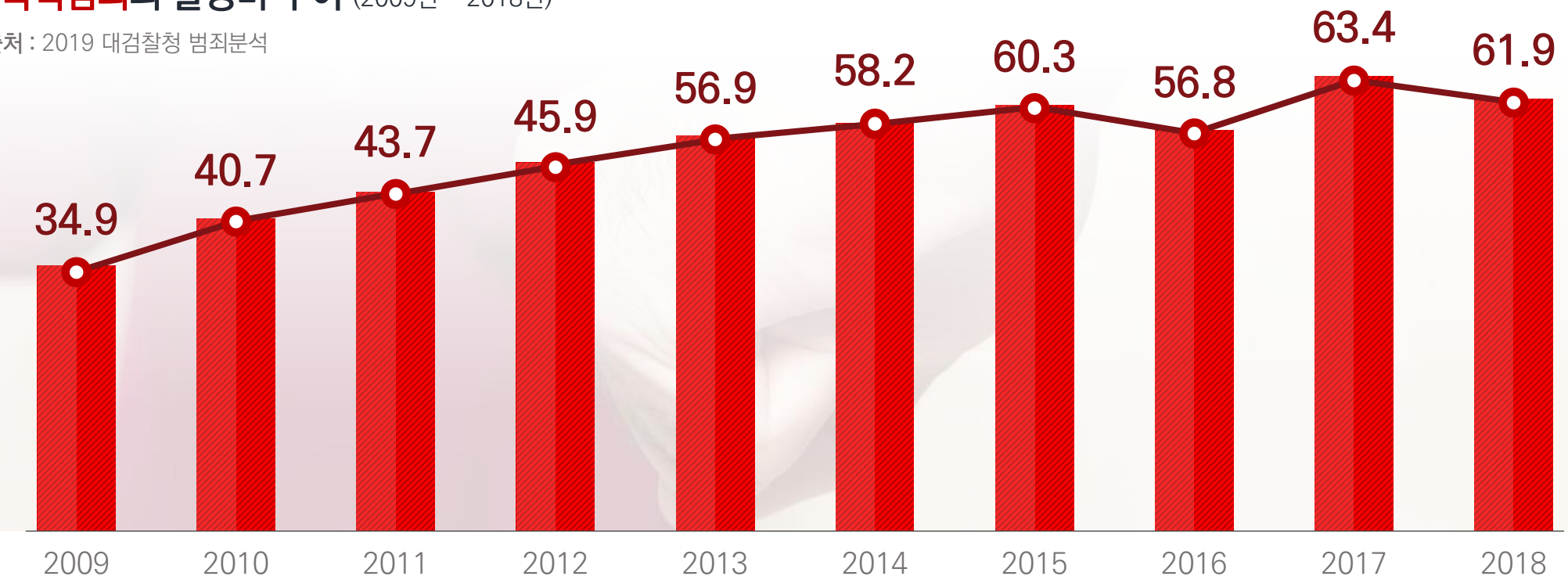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 성폭력

03 • 발생현황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 (2009년 ~ 2018년)

| 출처 : 2019 대검찰청 범죄분석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성희롱	성폭력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률로 금지됨

성희롱	성폭력
•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아닌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이 목적 •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성립	• 행위자 개인이 「성폭력처벌법」 과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 • 다른 범죄처럼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 충족 필요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을 동시에 적용 가능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과 「형법」이 정한 범죄성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 가능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 및 행위자의 처벌 가능성은 이후 진행되는 형사 절차를 통해 결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기관장(사업주)은 피해자 보호 및 조직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치 시행 필요



3. 디지털 성폭력

01 • 개념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협박 · 소지 · 구입 · 저장 · 전시 · 합성 · 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포괄

02 • 유형

① **온라인 그루밍**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등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2)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유인 · 권유하는 행위

적용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디지털 성폭력

02 유형

② **촬영**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설치형과 직접 촬영형이 있으며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

(1)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2)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③ **제작** –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 유사성교 ·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

(1) 폭행 ·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
(2)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

적용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3. 디지털 성폭력

02 유형

④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을 유포 또는 재유포하는 행위

* 유포자가 직접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과 같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각각 촬영죄는 미성립하더라도 동의없이 유포시 유포죄는 성립 가능

(1) 연인 등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성관계, 자위, 누드 등)을 동의 없이 유포

(2) 몰래카메라 등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

(3) 불법촬영물이거나 불법유포물인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 유포 시 음란물유포로서 처벌

(4)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적용법률 : (1), (2)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
(3), (4)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디지털 성폭력

02 • 유형

⑤ 합성 · 편집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1)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⑥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1)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2) 연인 간 이별 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연인과 결별 후 협박

(3)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형법」 제283조, 제324조

3. 디지털 성폭력

02 · 유형

⑦ 유통 · 소비 – 불법촬영물 · 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 유통, 유포 방조 · 협력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에게 적용

(1) 불법촬영물 및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판매 · 유통 및 유포 방조 (2) 불법촬영물 등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적용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5항

⑧ 디지털공간 내 성적 괴롭힘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1)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2) 게임 내 성희롱 (3) 단톡방 내 성희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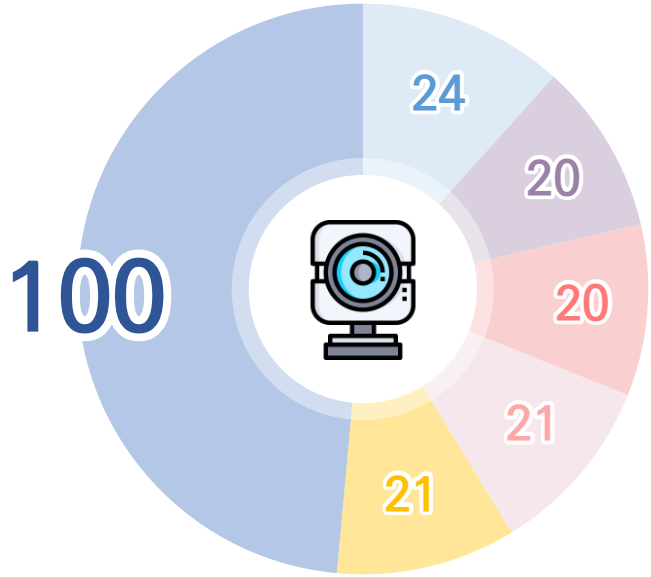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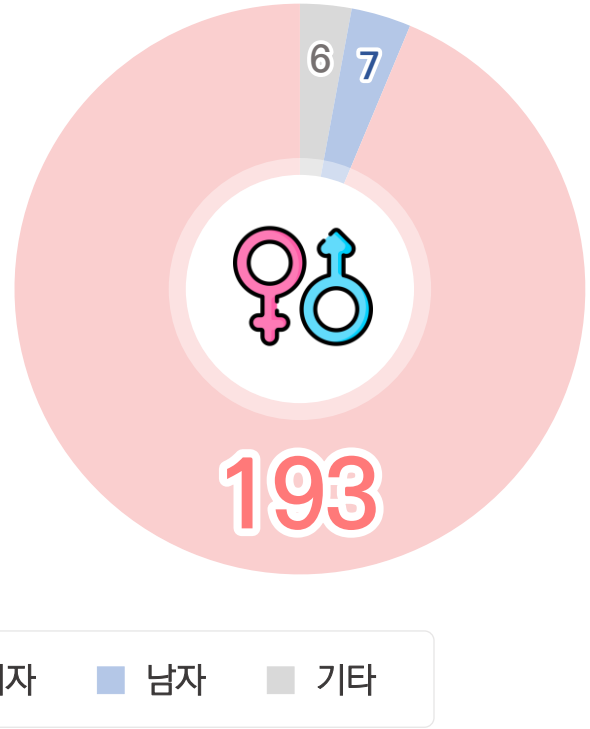
3. 디지털 성폭력

03 발생현황

피해유형



피해자 성별



3. 디지털 성폭력

Q1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 없이 찍은 사진,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2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Q3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수사 · 법률 · 의료지원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경찰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Q4 '지인 능욕', '단톡방 성희롱'도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사진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유포 및 성적 모욕이 이루어지는 소위
'지인 능욕' 피해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 내에서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그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추가로
유포되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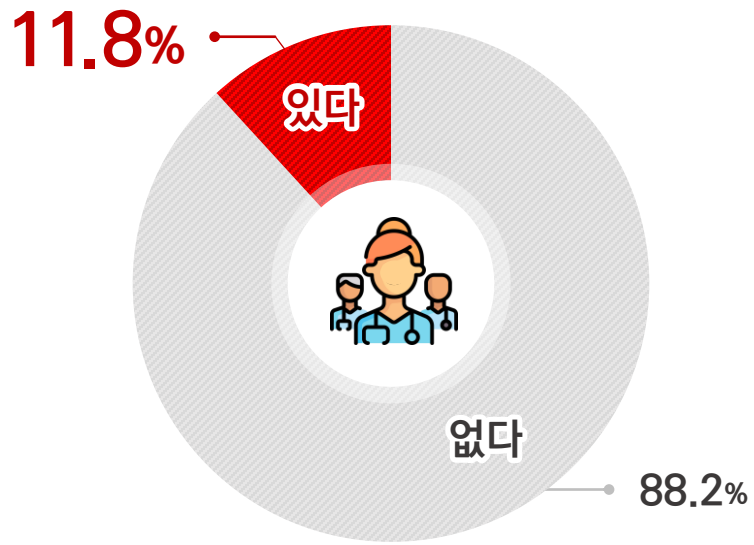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의료인 성폭력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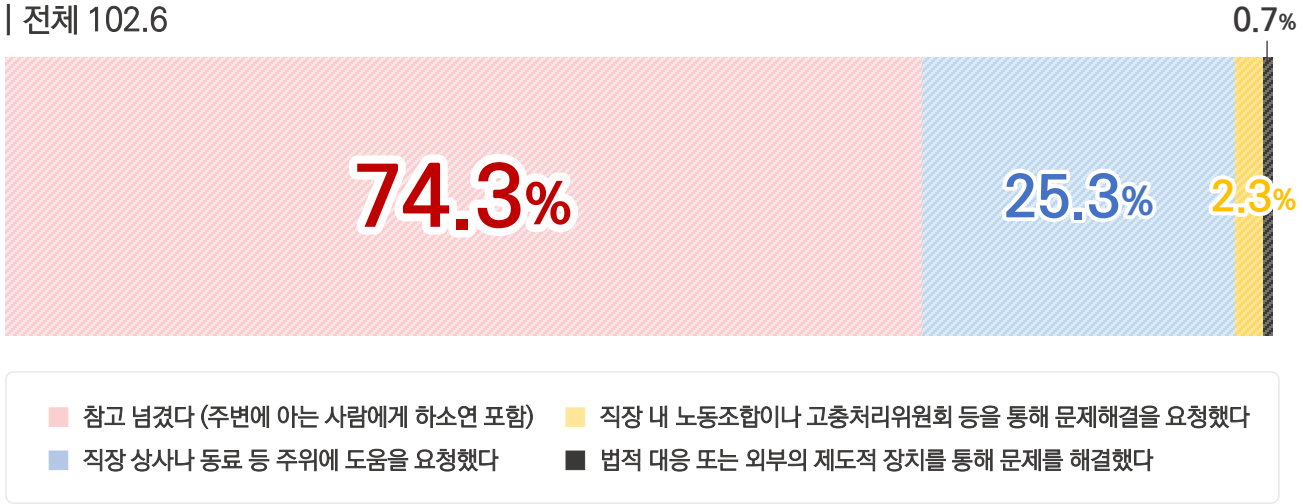
| 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 **의료인의 11.8%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직종별로는 간호사 직종이 14.5%로 가장 높은 비율**
- 피해 당사자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방법 선택
  (74.3%가 스스로 참고 넘겼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 요청한 응답자는 3% 미만)

의료인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대응 방식 (복수응답)



2. 환자와 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

01 예방전략

– 발생원인

-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폐쇄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신체
- 관행이나 문화로 여겨지는 성희롱
- 성적행동과 권력에 대한 개념 혼돈으로 성차별과 폭력에 둔감

직원 차원의 예방전략

– 환자의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묵인하지 않을 것

– 인력 상황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성 의료진이 동행

① 진료 상황: 심전도 촬영, 단순 도뇨, 수술을 위한 제모 등의 처치 시

② 간호 수행 상황: 주사, 활력 징후 측정, 드레싱, 체위 변경 등의 간호 수행

③ 검사 처치 상황: 소독, 검사를 위한 자세 교정, 체위 변경 등 검사 처치

–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가 단둘이 마주하는 상황을 되도록 만들지 않을 것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2. 환자와 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

01 예방전략

기관 차원의 예방전략

- 성희롱 · 성폭력 관련 규정·지침과 대응 조직을 만들고, 이행 여부 지속적 점검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 ① 입원 안내문, 검사 안내문, 환자의 의무 고지서 등을 통해 의료인 성희롱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규제 안내
  - ② 외래, 원무과, 응급실 등 환자와의 접점 부서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캠페인 실시
- 각 부서가 환자 정보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
  - ①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환자의 입원 시, 진료팀, 간호팀, 사회 사업팀 등 관련 부서가 회의를 통해 환자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추어 일관되게 응대
  - ② 외래에서 병동, 중환자실에서 병동 등으로 환자가 전동 시 'Reminder' 등의 알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원 간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 ③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행사하는 환자가 재입원하면,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간호일지, 진료 일지 등 의무기록에 작성하여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방법 공유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2. 환자와 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

02 피해자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행
–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중단 요청 – 녹음이 가능한 경우 녹음 사실 고지 후 녹음 시작 –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상황을 메모해두거나 진료 일지, 업무 일지에 기록 – 주변 동료나 관리자에게 도움 요청 및 보고 – 사내에 성희롱 구제 절차 혹은 고충 처리 절차 확인 및 신고 –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구체적인 해결책 요구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 · 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보호조치 요청 가능) – 합의, 처벌,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의 도움 요청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등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 가해자 DNA가 남아있을 물건,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정보 수집 – 씻지 않은 채로 병원이나 경찰서,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기관을 찾아가 함께 문제 처리 ① 여성긴급전화 1366 (각 지방 지역번호+1366 / www.women1366.kr) 24시간 사이버 상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구조·보호·상담 지원 ②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5 / www.hotline.or.kr)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문제 상담 가능 ③ 해바라기 센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해바라기센터'검색) – 성폭력 피해자 법적증거확보, 심리치료, 의료, 수사 및 법률 지원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2. 환자와 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

03 기관 대응방법

- 피해자의 말 경청 및 공감
-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 파악
-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 비밀 보장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찰, 관할 보건소 등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01 예방전략

- 발생원인
  - 관행이나 문화로 여겨지는 성희롱
  - 성적 행동과 권력에 대한 개념을 혼돈하며 성차별과 폭력에 둔감

직원 차원의 예방전략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 분명히 표현
- 성희롱이나 성폭행 동조 또는 묵인하지 않을 것
- 공과 사를 구분하여 행동
- 불필요한 강요하지 않을 것
- 사적인 영역 존중
-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을 것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을 것
- 음담패설 같은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하지 않을 것
- 타인의 신체나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갈 것
- 상대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즉각 중지
- 상대가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하지 않을 것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01 예방전략

기관 차원의 예방전략

- 기관 내 문화 및 분위기 변화 주도
  ① 음주 위주의 회식문화와 접대문화를 건전하게 변화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 방법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가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제고
  ③ 직장 내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 지시

- 성희롱 · 성폭력 관련 규정 · 지침과 대응 조직을 만들고, 이행 여부 지속적 점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01 예방전략

기관 차원의 예방전략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① 근거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는 기관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각 1시간 실시 의무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

② 계획 수립

- 실시 시기, 방법, 내용 등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 초빙, 위탁 교육 등)
  – 예산 과목, 금액, 예산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

③ 교육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④ 교육 방법

- 직원들의 관심 제고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사례 중심, 토론을 통한 사건 대응 절차 등으로 교육 내용 및 방식 구성
-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게 내용 구성
- 최고 경영자, 임원, 직원 모두 교육 참여

⑤ 강의안 작성, 교육, 프로그램 평가 진행

- 여성가족부 온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 활용 가능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접속 ▶ 전체메뉴 탭 ▶ 유형별 서비스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교육자료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 자료 활용 가능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 (http://shp.mogef.go.kr/shp/shpMain.do)

3.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02 피해자 대응방법

-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중단 요청
- 녹음이 가능한 경우 녹음 사실 고지 후 녹음 시작
-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상황을 메모해두거나 진료 일지, 업무 일지에 기록
- 주변 동료나 관리자에게 도움 요청 및 보고
- 사내에 성희롱 구제 절차 혹은 고충 처리 절차 확인 및 신고
- 행위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구체적인 해결책 요구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
- 유급 · 무급 휴가, 행위자의 부서 이동 등 요청
- 합의, 처벌,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의 도움 요청
- 2차 피해 발생 시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행위 중단 및 적절한 조치 시행 요구



사건처리절차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STEP 1

사건발생



STEP 2

고충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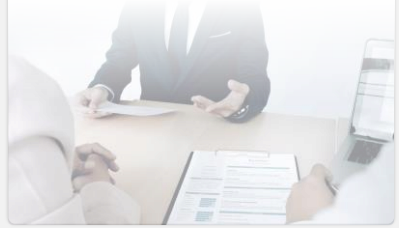
STEP 3

조사



STEP 4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STEP 5

사건 종결



사건처리절차

1. 고충접수

01 상담 신청, 신고, 인지

- 피해자, 대리인, 제 3자 등 누구나 사건에 대해 신고하거나 상담 신청 가능
-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운영
- 기관의 사건 처리 의지를 구성원들에게 표명함으로써 피해자 혹은 신고인이 용기를 내어 직접 고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조성

02 고충상담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의 개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파악하는 것이 목적

상담 시 고지할 사항

- 신뢰 구축 및 기초정보 확인
- 신고인 피해자 보호조치 안내
- 법률상 구제조치 및 기관 내 처리절차 안내
-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안내



사건처리절차

1. 고충접수

01 조사 신청 및 접수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조사 신청을 결정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제출)
- 신청서 접수 이전의 면담기록은 상담기록에 속하여 신고절차 대체 불가
- 신청인이 문서 작성이 불가할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 보존
- 신청인이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 외에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할 경우 조력

02 피해자 등 보호조치

- 피신고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약서를 받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2. 조사

01 조사 개시

- 조사 신청 접수 후 신속하게 조사 개시
- 조사 개시와 이후 진행일정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안내

02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준비

- 자체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두거나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

03 조사 절차 진행

- 조사 기간은 조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 연장 가능
-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처리
- 신고인, 피신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로 자료 제출 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 가능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2. 조사

04 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수집
- 모든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작성
- 대면조사가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전화, 서면 조사 가능
- 조사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 답변서를 사용하여 사실관계 정확하게 규명
- 피해자 이외의 조사 대상자에게 사건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약정하는 서약서를 받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 익명조서로 신고인과 참고인의 신분 보호 가능하지만, 행위자 조사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특정사실을 밝혀야 하므로 100% 익명이 보장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안내
- 조사자가 피해자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인식

05 조사중지

-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 중지 가능
-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조사절차 중단이 ‘무대책, 무대응, 무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지속

06 조사종료

-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01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해당 여부 결정
-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공간분리 등 피해자 보호와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휴가, 배치전환 등)
-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등 심의 및 의결
-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위원들도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사건종결

01 성희롱 인정 시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
- 고충처리 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 청취
- 기관장(사업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와 인사조치 결정

02 성희롱 불인정 시

- 사건 처리 절차의 미흡한 부분이나 조직 문화에서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제안 받아 향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에 반영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03 재발방지대책

-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는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서식은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또는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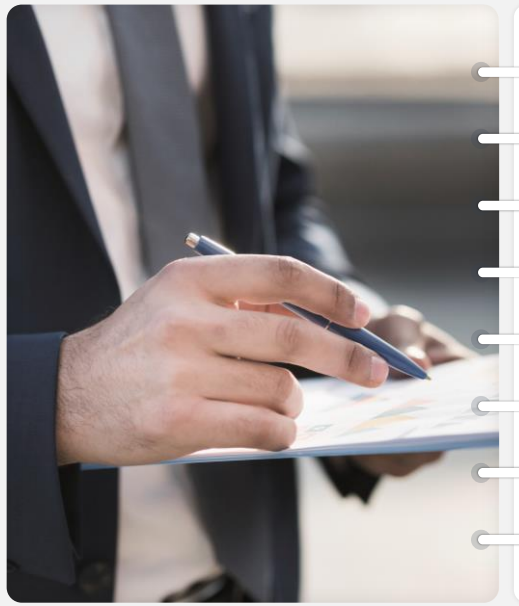
2차 피해 예방

1. 2차 피해란?

피해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와 같이 주변인들이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가하는 일

2. 2차 피해 행위

| 출처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8



기관이나 관리자

- 성희롱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혹은 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 피해자에게 조직, 기관, 타인을 위한 방식을 제안하고 강요하는 행위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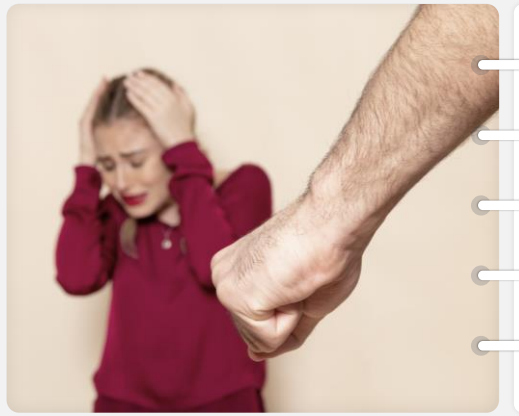
2. 2차 피해 행위

| 출처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8



동료 등 조직 구성원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행위자

-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행위자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2차 피해 예방전략

| 출처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8



기관 차원

-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직원들의 인식 개선
- 피해자가 면담을 원할 경우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
- 면담 내용은 기밀유지
-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임의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행위 금지



동료 등 조직구성원 차원

- 피해자의 평상시 행동, 업무능력, 외모, 성격 등으로 편견을 갖거나 판단 금지
- 사건에 관련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비밀 유지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싶어하면 더 이상 언급 금지
- 다른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해)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직장 내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4. 2차 피해 대응 프로토콜

| 출처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8



피해자 대응방법

- 기관이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 확보
- 행위자의 행위를 제3자에게 말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동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자제
- 금전적 배상요구는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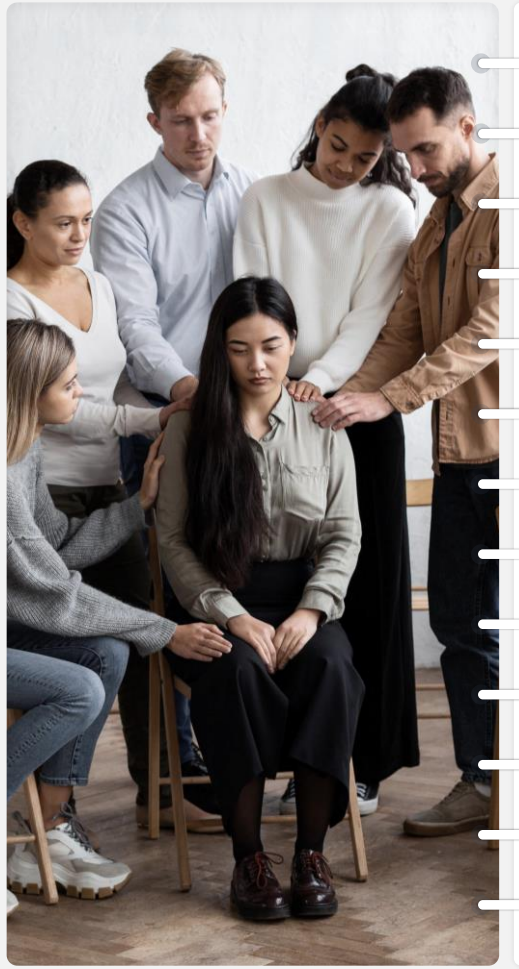
동료 등 조직구성원 차원

- 사건 발생 시 기관 내 여론 파악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
- 피해자가 업무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나 고충상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
- 행위자에게 2차 피해 방지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요청
- 기관과 관리자는 2차 피해 예방 등의 사후 관리
-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사건에 대해 불공정한 처리를 호소할 시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 지원 제공
- 사건 처리 이후 행위자 징계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적절한 조치 실시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4. 2차 피해 대응 프로토콜

| 출처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8



동료와 주변인 대응 방법

-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지지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자책감이 들게 하는 말 및 행위자 옹호 금지
- 사건을 피해자의 평소 행실, 업무(학업)능력, 성격 등과 관련 지어 언급 금지
-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사건 언급 금지
-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 확보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언급하는 행위 금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현황

연번	분야	사건처리기관	대상	조치 사항
1	공공 · 민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공공 · 민간	익명 상담,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2		국가인권위원회	공공 · 민간	조사, 조정, 구제조치 권고 (합의, 손해배상, 교육수강, 고발 및 징계 등)
3		(고용노동부) 온라인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공공·민간 근로자 (공무원 제외)	조사, 행정지도, 사업장 감독,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
4	공공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공공	조치요구 공문 발송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등)
5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국가공무원 (일반, 외무, 소방, 경찰)	(필요시) 직접 조사 및 인사감사, 심의 조치요구 공문 발송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등) 피해자 지원 (상담, 의료)
6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유치원, 초 · 중 · 고 · 대학, 교육부 소관 기관	(필요 시) 특별감사 조치요구 공문 발송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등)

1. 현황

연번	분야	사건처리기관	대상	조치 사항
7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콘텐츠업 종사자	피해자 지원 (상담, 의료, 법률)
8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영화산업 종사자 또는 참여자	피해자 지원 (상담 · 의료 · 법률) 권고, 조치 요구 공문 발송 (피해자 보호조치)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현업 · 예비 예술인	피해자 지원 (상담 · 의료 · 법률)
10	체육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계 선수 및 종사자	조사, 징계요구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요구), 피해자지원 (상담, 의료, 법률)
11	국방	(국방부) 국방 헬프콜, 각 군 양성평등센터	국방부, 각 군 장병 및 소속 구성원	조사 (각 군 법무실), 수사 (군 군사경찰, 조사본부), 징계, 피해자 지원 (상담·의료·법률)
12	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인 폭력피해 신고센터	의료계 종사자	피해자 지원 (상담 · 의료 · 법률)

2. 상담 신고 방법 및 연락처

연번	사건처리기관	구분	상담	신고	상담 · 신고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top.or.kr
		전화	O		☎ 02-735-7544 / 평일 9:00~18:00 (점심 12:00~13:00)
		이메일	O		metoo@stop.or.kr
		우편 / 방문	O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2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홈페이지		O	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전화	O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7544 / 평일 9:00~18:00 (점심 12:00~13:00)
		우편 / 방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O	O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O	O	☎ 국번 없이 1331
		이메일	O	O	hoso@humanrights.go.kr
		우편방문	O	O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2. 상담 신고 방법 및 연락처

연번	사건처리기관	구분	상담	신고	상담 · 신고
4	(고용노동부) 온라인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홈페이지		O	http://minwon.moel.go.kr
		전화	O		☎ 국번 없이 1350, 전국고용평등상담실
		우편방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홈페이지	O	O	http://www.mpm.go.kr./mpm/minwon/minwonCenter/complain/mcHrIntro/
		전화 팩스	O	O	(전화) 044-201-8500 (팩스) 044-201-8099 / 평일 9:00~18:00 (점심 12:00~13:00)
		이메일	O	O	mpm8500@korea.kr
		우편방문	O	O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6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홈페이지		O	https://www.moe.go.kr/sub/info.do?m=011508&page=011508&gubun=V2&s=moe
		우편방문			세종시 갈매로 408 14-2동 514호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출처

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2021.7.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2020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안양나눔여성회/한국여성재단
-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